암 산정특례 예외등록 건 사전심사 실시 안내

□ 추진배경

- 현황: 등록기준 예외적용자는 영상검사 시행 후 확진에 대한 임상 소견을 기재하여 신청하고 있으나,
 - 사후점검 결과 예외기준 미충족 등록 건 다수 발생 확인
-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적용자의 등록 절차 개선 필요

□ 개선내용 … 2024, 9, 2, 시행

○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적용 신청 건 중 일부 사전 심사 후 등록

■ 암 산정특례 예외등록 건 사전 심사 절차 ■										
구분	개선 전			개선 후						
운영 방식	신청 요양기관 정보마당 (소견등록)	승인 → 시스템 (20분 이내)	\Rightarrow	신청 요양기관정보마당 (소견등록+ 검사결과지 첨부)	>	심사 등록기준 예외적용 조건 및 확진소견 확인	>	승인 6 담당자 20분 이내	 심사 후	

- ※ 등록기준 예외적용자를 대상으로 ^①예외기준 필수검사(영상검사 등) 결과지, ^②조직검사 미실시 사유 적합성, ^③확진소견 확인 후 승인 또는 반송 처리
- (대상)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신청 건 중 사유가 <u>'5.기타'</u>인 대상자
 - * 환자 상태가 아래 5 가지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되어 필수검사(조직·세포학적 검사 등)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록기준 예외적용
 - ①ECOG 3이상, ②출혈위험성, ③전신마취 및 수술을 견딜 수 없는 상태, ④감염위험성, <u>⑤기타</u>
- (절차) 등록기준 적합성 검토 후 승인 또는 반송 처리
 - ※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승인
 - ① 예외기준 필수검사 시행 및 검사결과 유효기간 기준 충족
 - ② 조직검사 미실시 사유(조직검사가 어려운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소견) 기재
 - ③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(확진의견 포함) 기재
- (처리부서) 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 담당자

- (제출서류) 건강보험(암) 산정특례등록신청서, 등록기준 예외적용 필수검사 결과지
- (신청방법) 요양기관정보마당 등록 또는 서면 신청(※ KT EDI 접수 불가)
 - (요양기관정보마당 등록) 산정특례 등록 시 검사결과지 첨부
 - (서면 신청) 산정특례등록신청서와 검사결과지 관할 지역본부 제출

서울강원본부	F.02-3275-8114	광주전라제주본부	F.062-260-9009
부산울산경남본부	F.051-801-4208	대전세종충청본부	F.044-589-2309
대구경북본부	F.053-620-8010	인천경기본부	F.031-229-0407

참고 1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적용 사유

- 1. 대상 : 등록기준이 조직(세포)학적 검사가 필수검사항목으로 되어 있는 상병 중 환자 상태가 아래 5가지 사유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되어 조직(세포)학적 검사를 시행 하기에 어려운 경우에는 등록기준 예외적용으로 암 산정특례 등록신청 가능
 - ▷ 환자 상태가 조직(세포)학적 검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담당의사가 판단한 경우
 - ① 전신상태가 ECOG performance status 3 이상인 경우
 - ECOG performance status 3:제한적으로 자가 치료 가능하며 깨어있는 시간의 50% 이상을 누워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함
 - ECOG performance status 4:완전히 무력한 상태, 어떠한 자가 치료도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냄
 - ② 조직검사 시 출혈 위험성이 큰 경우
 - 심혈관계.뇌혈관계 질환으로 항응고제 복용중인 환자에서 항응고제 약물 복용을 중단 하면 환자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경우
 - 혈중 혈소판 10만 미만인 경우
 - Prothrombin time증가(60%미만)한 경우
 - 암이 주요혈관에 인접해 있어 조직검사 위험도가 높을 때
 - ③ 전신마취 및 수술을 견딜 수 없는 상태인 경우
 - 지속적인 활력징후 불안정
 - .수축기 혈압 90mmHq이하의 쇼크
 - .혈압 180/100mmHq이상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
 - .호흡수 30회/분 이상의 빈호흡
 - .조절되지 않는 고열
 - 폐기능이 좋지 않거나 산소포화도 90%미만의 저산소증 등으로 전신마취가 위험한 경우
 - 환자의 갑상선 기능항진 등의 호르몬 변화가 안정적이지 못해 침습적 검사나 전신마 취가 위험한 경우
 - ④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경우
 - 혈액학적 검사에서 Absolute neutrophil count가 1,000미만인 경우
 - ⑤ 기타
 - 암 산정특례로 등록된 자가 특례 기간 종료시점(종료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)에 잔존암,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, 암조직의 제거·소멸을 목적으로 수술, 방사선·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,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
 - 내시경을 통하여 조직검사가 필요한 암인 경우 체위를 취하기 어려운 척추장에 또는 골절을 수반하여 내시경이 어려운 경우
 - 염증성 유방암으로 피부궤양이 동반된 경우
 - 암이 중요장기에 인접해 있어 조직검사 위험도가 높을 때 등
- 2. 적용방법 : 전문의가 영상검사와 임상소견 등을 종합하여 암 진단 후 '건강보험 암 산정특례 등록신청서'에 조직학적·세포학적 검사 미실시 사유 및 환자상태 및 확진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신청서 발급

참고 2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적용 주요 오류 사례

- ① 검사결과지 판독일 전 진단확진일 등록
- ② 유효기간 기준 미충족한 검사결과지로 확진
 - ※ 검사결과지 유효기간: (신규암 및 중복암)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, (재등록 암) 적용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③ 조직(세포)학적 검사 미실시 사유 '5.기타' 부적합 사례
 - 조직검사 결과 확인 전 산정특례 등록
 - : '조직검사 접수 후 결과 대기 중', '수술 시 조직검사 예정', '상급 병원 의뢰' 등
 - 환자상태가 조직학적 검사 미실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적용하여 등록
 - : 단순 고령, 환자의 조직학적 검사 거부, 개인 사정 등
 - 영상검사만으로 확진 가능하다고 임의로 등록기준 예외적용
 - : 미실시 사유 란에 영상검사 판독 결과 기재
- ④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' 란에 '......' 또는 반복된 문장 기재